

한국경제  
4. 1.(월)

- 강성 야당 지지자 반발에...여론조사 중단시킨 여심위
- 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野 지지자 반발에 돌연 “공표 말라”
- 지역별 인구비율 맞춰 274만명 조사...여심위 변호들과 동일

## [보도내용]

- ① 여심위 전화조사 방식과 다른 조사방식(모바일 웹조사) 문제 제기
- ② 강성 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자 열흘간 문제를 삼지 않던 여심위가 기존 조사와 격차 크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하였다는 주장
- ③ 여론조사 실시 전 여심위에 신고하고 조사방식 등을 여심위와 사전 협의 하였으며 안심번호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
- ④ 패널 274만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는 주장

## [보도내용 ①에 대한 설명]

###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여심위가 규제 여부》

- 현재 가상번호, 모바일 웹조사, RDD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여론조사방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여심위에서는 조사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 실제 모바일 웹조사의 경우에 여심위 홈페이지에 다수 등록되어 있음.

-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인지 여부만 확인

## [보도내용 ②에 대한 설명]

### 《강성 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자 열흘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인 A업체에 대한 조사는 3. 18.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서울, 경기, 부산·경남)에 대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해당 조사의 가중값 배율 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 20. 조사가 시작되었음.

○ 조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항의나 신고·제보 사실은 없었으며,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식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3. 30.)한 사실이 있음

☞ 조사결과 등록(3. 18.) ⇒ 결과 모니터링 가중값 이상(3. 19.) ⇒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요구(3. 20.) ⇒ 추가자료 제출요구(3. 29.) ⇒ 민주당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3. 30.) ⇒ 자료 일부 미제출자료 제출 촉구 요청(3. 30.)

**《기존 조사와 격차 크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

○ 상기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미달하였으며, 가중값 배율 역시 미준수, 홈페이지 사실과 다르게 등록(읍·면·동 구성비율)하여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함.

**<가중값 배율 미충족>**

연 번	계 층	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가중값
1	전국 - (지역) 부산 북구	132	92	0.69
2	서울 - 70세 이상	65	105	1.61
3	부산·경남 - 70세 이상	59	106	1.79

※ 가중값 배율 기준 : 0.7 ~ 1.5

**<응답자 특성표>**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가중값
전 체		794	794	1.00
성 별	남성	399	398	0.99
	여성	395	396	1.01

※ 최소 표본수 크기 : 800명 이상(시·도단위 조사)

## [보도내용 ③에 대한 설명]

### 《여론조사 실시 전 여심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고 후 진행》

- 공직선거법 제108조3항에 규정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의뢰하여 A가 실시한 조사는 여심위에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 다만 A측에서 통신사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어 여심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안내

###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춘 274만명의 표본틀을 사용하였으며 안심번호와 다르지 않음》

- A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A가 보유한 패널은 ① 디지털마케팅회사 아웃소싱을 통한 패널모집 ② 검색광고를 통한 모집 ③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한 방법으로 패널 구축한 것으로,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전화번호 패널을 활용한 것은 아님.
- 상기 소명에 의하면 A가 보유한 패널은 지역별 구분(읍·면·동)이 불가능한 표본틀로, 성·연령·지역비율을 인구구성 비율에 맞게 할당하는 가상번호와 다른 방식임.

## [보도내용 ④에 대한 설명]

### 《패널 274만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

- 여심위가 요구한 자료는 통상의 원자료 분석에 필요한 표본추출틀\*에 관한 것이었고, 개개인에 대한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화번호 및 성·연령·지역 등 원자료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 A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제출하거나 단순 성·연령·지역별 표본수를 요구하였음.

- ☞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법 제108조6항)
- ☞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08조9항).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필요성》

- A가 제출한(4. 1.) 자료를 확인한 결과 A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추출틀과 원자료의 추출틀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등록번호	중앙여심위홈페이지 등록내역		원자료 확인 내역		비고 (차이값)
	조사지역 (선거구)	추출틀	시군구	추출틀	
13201	양산시읍	18,529	양산시	19,258	-729
13200	부산 북구	36,627	부산 북구	12,763	23,864
13157	영등포구갑	67,751	영등포구	20,674	47,077
13140	하남시갑	65,769	하남시	15,902	49,867
13134	성남시분당구을	42,467	성남시분당구	23,050	19,417
13133	중구·성동구갑	73,127	중구, 성동구	22,168	50,959
13107	용산구	65,917	용산구	11,797	54,120
13103	송파구갑	93,650	송파구	34,826	58,824

※ 원자료는 선거구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제출

- 예를 들어 용산구 선거여론조사에서 용산구 지역 거주자 65,917명을 추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표본추출틀 확인 결과 해당 표본추출틀에 용산 지역 표본 수는 11,797명에 불과하여, 54,120의 표본 숫자 차이가 발생함.
- 이와 같이 A가 제출한 추출틀 자료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와 달라 A가 실제 사용한 표본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